

특별유족인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60일 (신청안내 참고)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
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석면질병 종류	[] 원발성 악성중피종 [] 원발성 폐암 [] 미만성 흉막비후 [] 석면폐증
	사망 연·월·일	

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: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,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.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: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,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,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(폐기능 장애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) 3.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(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 5. 석면질병으로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신청안내

1. 의학적 사유로 60일의 처리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2.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.
3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특별유족인정을 받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.
 - 가.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: 2025년 12월 31일
 - 나. 가목 외의 경우: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날

처리절차

